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5. 9(금)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4인)

불참위원 : 없음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록과 속기록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국회에서 2014년 제15차 회의의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차수의 회의 내용 중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과 “법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며,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결과 공개 시,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 중 인사에 관한 사항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위원, 사무국 보고자의 성명을 음영처리하고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사업자명을 음영처리하여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중에 우수한 부분은 그대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미흡한 쪽만 음영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지요?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재홍 상임위원

- 위원장님, 예정된 안건 심의 전에 긴급사안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유족들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편향보도와 그 간부의 실언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태입니다. 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오후부터 유족들이 KBS를 항의방문했고, 거기에서 제대로 해명사과를 요구한 대로 받지 못하자 지금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을 만나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구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견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KBS의 평상 보도내용이나 논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해 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독립성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상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재난방송입니다.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입니다. 재난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당한 부분 책임을 함께 가지고, 그 재난방송 보도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제2기 방통위입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살펴본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지금 제2기 방통위가 내놓은 제안서, 의견서를 근거로 KBS 수신료 인상을 거의 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KBS가 수신료 인상안이 여기에 오기 전에 방송 보도 콘텐츠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또 재원구조나 인력구조를 개편하는 자구책 노력을 내놓고, 사회적·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에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이미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피해유족, 바로 재난의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이렇게 심각한 항의를 받고 또 그것을 제대로 해명하거나 소통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까지 찾아가서 면담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형식이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권과 규제권을 활용해서 입장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일단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KBS의 보도내용, 재난방송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해 온 것을 그대로 향후 KBS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적 입장, 또 몇 년 뒤에 있을 재허가 심사 과정에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강력히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KBS 간부의 실언에 대해서 재난의 피해유족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재발방지과 정말 엄정한, 국가 재난방송 주관사의 책임간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공적책임을 가진 방송 일반의 의식과 더군다나 재난방송을 맡고 있는 공영방송의 책임감이 재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를 긴급사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표현을 KBS 간부의 실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보도를 보면 KBS의 보도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인지 우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KBS 측에서는 그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고 하고 또 그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설사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에 앞서서 우선 사실조차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저희 회의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우선 진상을 파악한다고 할까,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로서 최소한의 책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는 찾아봐야겠지만 우선 일반 국민들 여론층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KBS의 그런 편향보도나 간부의 실언에 대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이 직접 책임이 있어 그 쪽으로 쫓아가겠습니까?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정부기구 일원으로서 또는 국정 책임자로서 더군다나 방송분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기관으로서 어떤 책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여론층의 시선입니다. 언론계의 시선입니다. 더군다나 KBS 내부에서 젊은 기자들의 반성문이 10여건 발표됐고 엇그저께는 그것이 그대로 발표, 집약되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과 또 시정요구와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체 내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KBS가 해온 무엇이 문제여서 재난의 피해유족들이 저렇게까지 항의하고 있는지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회의에서 필요한 것은 의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방송정책국에 필요한 보고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긴급사안인 만큼 예정된 의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직자 정부기구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여론과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사 여론과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사태는 KBS 간부의 실언이 있었다고 보도된 것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것을 조사한다든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반성문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저희에게 정해진, 부여된 권한 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차후 검토한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 원하시면 긴급회의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렇게 하실까요?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도 있고 재난방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상조사라는 것이 반드시 사람을 불러서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조사도 조사입니다.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그 피해유족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격분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하거나 무엇을 주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까지 파악해서 상임위원 회의든지 간담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위원장께서 방송사 사장들 대표를 만나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재난방송, 이런 상황에서 방송할 때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 달라,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법적인 근거, 우리의 권한 근거를 찾기 전에 권유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우선 당장 사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해당 KBS의 고위 간부들에게 참고사항 정도로 전해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으면 근거 있는 대로 구속력을 갖고,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비공식 간담회나 권유 정도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여기에 방송정책국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지금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안 나와 계시면 전달해 주십시오. 방송정책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그 보고를 해달라고 전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의 반복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차츰 검토해서 차후에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원제 부위원장

- 일단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보도국장의 발언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겠지만 현재까지 당사자의 해명이나 보도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아직 본인의 발언내용이 일부 언론의 내용과는 달리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관계 자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KBS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스스로 내부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지금 아마 방송에서도 이렇게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방통위에서 직접 나서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KBS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은 여러가지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는 '재난방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쯤 소집해서 거기에 각 지상파방송사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재난방송협의회에서 지금까지의 재난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교환도 해 보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의 사실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간단히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방송정책국의 KBS에 대한 사실관계, 진상파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 자체도 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김재홍 위원님이 오늘 구두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송법상 내지는 방통위 설치법상 우리가 어떤 법적 권한이나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부터 우선 따져 본 이후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사실관계나 진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절차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걱정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상황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지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히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 역시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이, 특별히 무엇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난방송협의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도 재난방송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KBS는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난방송의 개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재난방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 규정의 정의를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고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정한 재난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법률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관기관에 관해서는 제3항에서 한국방송공사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특별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송협의회는 미래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정책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창조과학부대로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대로 각 방송사 언론기관 또 인터넷매체 등에게 보도나 또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준칙에 맞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난방송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었는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재로는 재난방송협의회가 특별히 이미 각 언론 및 방송사에 요청한 것 이외에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개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그 경과를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 재난방송협의회가 여전히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소집요구 여부를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 허원제 부위원장

-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방통위나 미래부 차원에서 재난방송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협의체를 통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라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장치는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재난방송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이 언론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 또 지적이 된 부분도 있었고, 잘못된 오보도 있었고, 또 지나친, 우리 재난방송 보도준칙을 어겨서 방송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은 중간점검의 단계라고 한다면 한 번쯤 재난방송협의회를 소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한 번쯤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재난방송협의회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소집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지금 재난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재난방송을 지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저도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또 그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재난방송을 하고 있는지 법적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이미 재난방송이고 재난방송 주관사로 지정되어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근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주문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방송정책국이나 재난방송 담당부서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최소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제2기 방통위가 연속성이 있다고 보면 방통위가 인상이 타당하다는 방향의 의견서를 보내면서 다만 조건을 부과한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도의 공정성입니다. 제작의 자율성입니다. 제작의 자율성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자와 PD와 말하자면 직업 언론인들이 제작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의 공정성, 콘텐츠의 공정성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재난상황에서 현저히 파괴됐습니다. 지금 그 피해유족들이 방송에 항의하고 다니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BS에 어젯밤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제대로 안 되니까 청와대에 쫓아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방송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항의하겠습니까? 그것은 KBS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KBS는 직접 당사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법적근거는 찾아보기로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 냈던 수신료 인상의 의견서, 그 전제조건 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국가재난방송 상황에서 피해유족들의 격분을 살 만큼 현저하게 파괴됐으므로 이

것은 취소한다고 할까, 보류한다고 할까, 말하자면 국민 여론층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상임위원 회의에서 결정, 의결하든지 좀 더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근거를 하도 말씀하시니까 최소한 우리가 KBS에 대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은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근거는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연구해보기로 하고, 그런 입장표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입니다. 그 의견서의 내용을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위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이 위반되고 있는지 여부는 각각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반 여부를 저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연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저희로서는 의견을 전부 담아서 보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의견서에 담겨있는 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조사할 아무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역으로 방송의 편성에 저희가 오히려 개입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먼저 진상을 파악하고 자료조사라도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송정책을 주관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민심에 부응하는, 더군다나 재난의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입장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법적근거 없이 그냥 횡포, 전횡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저희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이 우선 가능한지도 검토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KBS가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물론 법적·과학적인 근거를 다 규명하려면 시일이 많이 가겠지요.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 그

상처는 말하자면 더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난 뒤에 하면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통위가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할 때, 지금 상황에서 KBS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피해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근거가 과연 편향방송, 편향보도 때문인지 편향성 여부를 근거 있게 조사해서 정리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재허가 심사 때 철저히 반영하겠다는 것은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경고가 될 수 있고 신중한 재난방송을 하라는 주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요구, 징벌요구보다도 말하자면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KBS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방송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안건이 <의결안건> 1건으로 저는 통보를 받았는데 오늘 회의장에 오니까 김재홍 위원님이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30분 정도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크게 3가지 같습니다. KBS가 주관 재난방송사업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했느냐, 그리고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KBS 간부의 발언과 관련한 문제, 세 번째는 그런 등등과 관련해서 KBS의 수신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제3기 방통위의 의견표명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한 30분 정도 논의했으니까, 이 문제는 사전에 티타임을 통해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준비된 안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건이 있으시면 김재홍 위원님께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사안이라고 말씀드렸고, 상임위원 전체회의가 반드시 간담회를 거쳐서 예정된 의안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제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상황을 지켜봤고

그것을 분석·정리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긴급사안이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주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다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또 나와서 거기에서 철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긴급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방송정책에 대해서 청와대보다 훨씬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자꾸 방송정책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가 방송정책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아니요. 그런 추상적인 말씀과 지금 이 사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특히 지금 이 사안이 촉발된 것은 어느 방송사의 간부의 발언이 우선 진의도 확인이 안 됐지만 그 발언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방송정책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그 구성원의 그 발언 개개마다 저희가 간섭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조사하겠다, 평가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방송의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 **김재홍 상임위원**

- 그 방송사 간부가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입니까? 공인입니다. 준공직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공인이건 개인이건 간에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방송사 간부로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요직에 향의하는 것이지, 그냥 자연인으로 했으면 향의하지 않겠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KBS 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일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징계를 하든지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앞서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겠다, 그런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은 또 조사해 봐야겠지만 해명이 변명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오늘 아침인지 어제 밤인지 보도본부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데 그 면담내용을 유족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로 쫓아간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면담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KBS 자체 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방송정책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방송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하는데 방송 전반에 대해서 방송사 간부들의, 재난 방송 간부들의 그 행동 전반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고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권유한 것은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 정도에서 논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홍 위원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기정사실화시켜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안 하나하나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 위원회가 그 사안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법적책임 부분에 관해서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안전 자체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중앙정부 행정기구로서 제2기에서 이미 올린 사안을 지금 방송사 간부 한 사람의 내용, 그 보도내용도 사실여부가 확실치 않은 그 건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격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앞으로 정말 우리 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정부 중앙기관으로서 공신력이나 무게감의 격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김 위원이 말씀하시는 뜻을 짐작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절차를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2014-16-05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용자정책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주식회사 비에스아이티 등 10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과는 먼저 허가신청 공고 및 접수를 2월 27일~3월 20일까지 받았고, 그다음에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것은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했습니다. 그 허가 심사위원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허가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는 먼저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정보보호 조치계획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시 적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 해당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는 주식회사 비에스아이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주식회사 비텔, (주)스타소프트, 아이팝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티모아, 퀵컴씨디엠에이테크날리지코리아(유) 등 7개 법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뉴덕성(주), (주)아이캐빈, 주식회사 위앤팩토리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점 및 심사사항 점수 미달로 부적격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법인 별 성적은 아래 평가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으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통보 및 허가서 교부를 5월 9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최근 몇 년 동안 위치정보사업자의 연간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심사건수와 그중에서 적격으로 판정을 받은 허가사업자 수….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오늘까지 전체 20회 허가 심사를 했고, 오늘 적격으로 판단된 사업자를 합쳐서 121개 사업 자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은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3개 항목해서 70점 이상 맞으면 적격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상정한 허가 심사 건에 관한 의견은 크게 없고, 제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3, 4가지 드렸으면 합니다. 또 하나 그 전에 이번에 심사 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 이쪽의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기술분야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일부 풀(Pool)에 정보보호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아마 그쪽 전 공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크게 3가지를 드렸으면 합니다. 첫째, 저는 허가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허가건수로 봤을 때 허가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행정 의 효율성이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적시에 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니즈 (Needs)를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검토를 앞으로 했 으면 좋겠다, 그래서 규모가 큰 위치정보사업자, 설비도 많이 설치하고 매출이나 이용자 수 적인 면에서 대규모인 사업자들은 허가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번에도 적격이라 고 판정된 법인들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제로 해 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진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자 들도 이야기하지만 허가와 등록이 운영 여하에 따라서 등록제로 운영하면 심사가 허술해지 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두 번 째는 위치정보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을..., 심사기준은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쪽으로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런 강화된 심사기준 하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업 종별로 가이드라인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위치정보사업인 경우에도 실 태점검을 해 보고 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위치정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방통위의 기능과 역할이 이런 허가심사와 진

입규제만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 표준화, 이용촉진, 그리고 이 사업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사업의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 내지는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방통위가 국제협력 업무도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저는 위치정보사업의 경우 해외진출로도 굉장히 유망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글로벌 IT기업,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이 요새는 GPS 정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앱을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종 앱들도 많은 경우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입규제를 허가와 등록으로 이원화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위치정보사업이라는 것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사기준도 강화하고 평소에 관리·실태점검도 하고, 심사위원도 그런 전문가를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포괄적인 진흥업무까지도 앞으로 수행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위치정보가 요즘 우리가 진짜 아주 잘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정보, 현재 이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오늘까지 받는다면 121개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이 사업을 처음 우리가 허가를 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2005년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2005년이면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그러면 초기에 시작한 사업자라든지, 그러니까 10년 정도, 사업자 120개가 넘는, 이 사업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 이후 모든 사업자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슨 앱에 들어가려면 위치 정보에 동의하느냐, 제가 동의를 안 하려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 위치에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데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그 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추어서 보면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자들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가된 이후에도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현재 허가받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종합적으로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허가가 났는데 그 뒤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 여부도 체크가 안 되고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허원제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업계획서, 제일 처음에 제출되고 허가받은 사업계획서 이외의 목적에 다른 일탈행위는 없는가,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감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개인정보 분야에서 위치정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굉장히 민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에 대해서 일단 허가해 준 뒤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한 것이지만 심사기준이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과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강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디지털 정책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위주, 편의주의 위주로 해 온 것을 이제는 속도를 낮추고 효율성을 낮추더라도 윤리와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와 인권 보호 이런 것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3가지의 평가항목 중에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에 가점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내용을 보니까 부적격으로 떨어진 업체 중에 (주)아이캐빈을 보면 기술능력은 78.63점으로 전체 중에 두 번째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위치정보 보호조치 적정성도 뛰어납니다. 70.25이면 평균 이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재정적 능력이 떨어져서 부적격으로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구제해 줄 것까지는 없겠지만 이런 업체는 제가 보기에 괜찮은 업체인 것 같습니다. 자본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지원할 수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채수, 삼수 할 수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패자부활전에 올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심사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차원에서라도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 이것을 더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선점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정책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은 아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허가과 등록을 나누어서 큰 건은 허가를 하되 작은 것들은 등록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고 제언하셨는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업체일수록, 제가 중소기업 전체를 비방할 생각이 전혀 아니고, 큰 기업체는 그래도 체계화되어 있고 우리가 또 감독한다고 할까 들여다보기도 쉬울 텐데,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있으면 다 들여다보기 어려울 텐데 그냥 자율적 등록이나 신고 제로만 전환하면 아직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적정한 심사와 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직 옳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 신청한 업체들이 전부 개인위치정보를 다 활용합니까, 아니면 개인위치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둘 다 섞여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 '위치정보'의 개념 정의가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되어 있고, 특정 개인의 '개인위치정보' 개념이 따로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이런 개인위치정보를 쓰는 업체도 있고 사물위치정보...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서류상으로 보면 일단 차량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제도를 개선할 때 개인정보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규모로 하지 않더라도 관련 위치정보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허가과 등록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날짜는 5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5분 폐회 】